

청약안내문[일반공급] (1/6)

청약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의 개정, 인허가 과정,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편집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,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 청약 자격 미숙지,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모든 청약자격 및 요건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.

일반공급 청약 일정

신청일자		신청방법	당첨자 발표
1순위	해당지역 (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터넷 청약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PC : www.applyhome.co.kr - 스마트폰 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26.06.05(금) 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홈페이지 (www.applyhome.co.kr)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로그인 후 개별 조회
	기타지역 (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,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)		
2순위			

1순위 청약 요건 셀프 체크

아크로 리버스카이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아래 청약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단지로 실거주의무는 없습니다)		
1순위 청약신청 조건	1. (해당지역) 서울특별시 2년이상 계속 거주자입니다. (기타지역)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이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입니다.	1~5 모두 만족시 1순위 청약 가능
	2. 만19세 이상 성년자이며 세대주입니다.(외국인, 세대원 청약불가)	
	3.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이고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합니다.	
	4.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된 분에 세대에 속한자가 아닙니다.(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)	
	5. 무주택이거나, 1주택(분양권 등 포함)만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 입니다.(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)	
※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2순위로 청약신청 가능하며,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추천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 또한, 1순위 청약 신청 불가 시 2순위 청약가능함(단, 만19세이상 성년자이면서 청약통장 가입자) ※ 해당청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 및 1순위, 2순위 모두 청약이 불가합니다.		

청약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

구분	내용				
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(자녀양육, 형제자매부양)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1순위 신청 가능 - 세대주일 것(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, 규제지역 1순위 청약 불가) -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-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분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본 주택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에 따라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2순위로 청약신청 가능하며,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추천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 				
청약통장 자격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 - 1순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청약예금 :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(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형에 한함)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- 2순위 :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·청약부금·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				
	[청약예금의 예치금액]				
	구분	아크로 리버스카이 (타입)	서울특별시	경기도	인천광역시
	전용면적 85㎡ 이하	36, 44, 51, 59, 84	300만원	200만원	250만원
	전용면적 102㎡ 이하	36, 44, 51, 59, 84	600만원	300만원	400만원
	전용면적 135㎡ 이하	36, 44, 51, 59, 84	1,000만원	400만원	700만원
모든 면적	전 타입 가능	1,500만원	500만원	1,000만원	
※ '지역'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※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					

청약안내문[일반공급] (2/6)

청약신청자격 및 유의사항

구분	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당첨자 선정 순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순위 가점제 : ①지역 → ②가점 →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→ ④추첨 - 1순위 추첨제 : ①지역 →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→ ③추첨 - 2순위 : ①지역 → ②추첨 ① 지역 : 해당지역 거주자(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) → 기타지역 거주자(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,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) ② 가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/추첨제 적용비율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구분	가점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전용면적 60㎡ 이하	4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전용면적 60㎡ 초과 85㎡ 이하	7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전용면적 85㎡ 초과	8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- 가점 산정기준표(『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』 별표1의2 나목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가점항목	가점상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① 무주택기간	3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② 부양가족수 (청약신청자 본인 제외)	3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	1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가점구분</th> <th>점수</th> <th>가점구분</th> <th>점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만30세 미만 미혼자</td> <td>0</td> <td>8년 이상 ~ 9년 미만</td> <td>18</td> </tr> <tr> <td>1년 미만</td> <td>2</td> <td>9년 이상 ~ 10년 미만</td> <td>20</td> </tr> <tr> <td>1년 이상 ~ 2년 미만</td> <td>4</td> <td>10년 이상 ~ 11년 미만</td> <td>22</td> </tr> <tr> <td>2년 이상 ~ 3년 미만</td> <td>6</td> <td>11년 이상 ~ 12년 미만</td> <td>24</td> </tr> <tr> <td>3년 이상 ~ 4년 미만</td> <td>8</td> <td>12년 이상 ~ 13년 미만</td> <td>26</td> </tr> <tr> <td>4년 이상 ~ 5년 미만</td> <td>10</td> <td>13년 이상 ~ 14년 미만</td> <td>28</td> </tr> <tr> <td>5년 이상 ~ 6년 미만</td> <td>12</td> <td>14년 이상 ~ 15년 미만</td> <td>30</td> </tr> <tr> <td>6년 이상 ~ 7년 미만</td> <td>14</td> <td>15년 이상</td> <td>32</td> </tr> <tr> <td>7년 이상 ~ 8년 미만</td> <td>16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0명</td> <td>5</td> <td>4명</td> <td>25</td> </tr> <tr> <td>1명</td> <td>10</td> <td>5명</td> <td>30</td> </tr> <tr> <td>2명</td> <td>15</td> <td>6명 이상</td> <td>35</td> </tr> <tr> <td>3명</td> <td>20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6개월 미만</td> <td>1</td> <td>8년 이상 ~ 9년 미만</td> <td>10</td> </tr> <tr> <td>6개월 이상 ~ 1년 미만</td> <td>2</td> <td>9년 이상 ~ 10년 미만</td> <td>11</td> </tr> <tr> <td>1년 이상 ~ 2년 미만</td> <td>3</td> <td>10년 이상 ~ 11년 미만</td> <td>12</td> </tr> <tr> <td>2년 이상 ~ 3년 미만</td> <td>4</td> <td>11년 이상 ~ 12년 미만</td> <td>13</td> </tr> <tr> <td>3년 이상 ~ 4년 미만</td> <td>5</td> <td>12년 이상 ~ 13년 미만</td> <td>14</td> </tr> <tr> <td>4년 이상 ~ 5년 미만</td> <td>6</td> <td>13년 이상 ~ 14년 미만</td> <td>15</td> </tr> <tr> <td>5년 이상 ~ 6년 미만</td> <td>7</td> <td>14년 이상 ~ 15년 미만</td> <td>16</td> </tr> <tr> <td>6년 이상 ~ 7년 미만</td> <td>8</td> <td>15년 이상</td> <td>17</td> </tr> <tr> <td>7년 이상 ~ 8년 미만</td> <td>9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이가입</td> <td>0</td> <td>1년 이상 ~ 2년 미만</td> <td>2</td> </tr> <tr> <td>1년 미만</td> <td>1</td> <td>2년 이상</td> <td>3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가점구분	점수	가점구분	점수	만30세 미만 미혼자	0	8년 이상 ~ 9년 미만	18	1년 미만	2	9년 이상 ~ 10년 미만	20	1년 이상 ~ 2년 미만	4	10년 이상 ~ 11년 미만	22	2년 이상 ~ 3년 미만	6	11년 이상 ~ 12년 미만	24	3년 이상 ~ 4년 미만	8	12년 이상 ~ 13년 미만	26	4년 이상 ~ 5년 미만	10	13년 이상 ~ 14년 미만	28	5년 이상 ~ 6년 미만	12	14년 이상 ~ 15년 미만	30	6년 이상 ~ 7년 미만	14	15년 이상	32	7년 이상 ~ 8년 미만	16			0명	5	4명	25	1명	10	5명	30	2명	15	6명 이상	35	3명	20			6개월 미만	1	8년 이상 ~ 9년 미만	10	6개월 이상 ~ 1년 미만	2	9년 이상 ~ 10년 미만	11	1년 이상 ~ 2년 미만	3	10년 이상 ~ 11년 미만	12	2년 이상 ~ 3년 미만	4	11년 이상 ~ 12년 미만	13	3년 이상 ~ 4년 미만	5	12년 이상 ~ 13년 미만	14	4년 이상 ~ 5년 미만	6	13년 이상 ~ 14년 미만	15	5년 이상 ~ 6년 미만	7	14년 이상 ~ 15년 미만	16	6년 이상 ~ 7년 미만	8	15년 이상	17	7년 이상 ~ 8년 미만	9			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이가입	0	1년 이상 ~ 2년 미만	2	1년 미만	1	2년 이상	3
가점구분	점수	가점구분	점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만30세 미만 미혼자	0	8년 이상 ~ 9년 미만	1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년 미만	2	9년 이상 ~ 10년 미만	2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년 이상 ~ 2년 미만	4	10년 이상 ~ 11년 미만	2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년 이상 ~ 3년 미만	6	11년 이상 ~ 12년 미만	2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년 이상 ~ 4년 미만	8	12년 이상 ~ 13년 미만	2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년 이상 ~ 5년 미만	10	13년 이상 ~ 14년 미만	2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년 이상 ~ 6년 미만	12	14년 이상 ~ 15년 미만	3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년 이상 ~ 7년 미만	14	15년 이상	3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년 이상 ~ 8년 미만	1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0명	5	4명	2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명	10	5명	3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명	15	6명 이상	3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명	2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개월 미만	1	8년 이상 ~ 9년 미만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개월 이상 ~ 1년 미만	2	9년 이상 ~ 10년 미만	1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년 이상 ~ 2년 미만	3	10년 이상 ~ 11년 미만	1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년 이상 ~ 3년 미만	4	11년 이상 ~ 12년 미만	1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년 이상 ~ 4년 미만	5	12년 이상 ~ 13년 미만	1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년 이상 ~ 5년 미만	6	13년 이상 ~ 14년 미만	1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년 이상 ~ 6년 미만	7	14년 이상 ~ 15년 미만	1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년 이상 ~ 7년 미만	8	15년 이상	17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년 이상 ~ 8년 미만	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이가입	0	1년 이상 ~ 2년 미만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년 미만	1	2년 이상	3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※ 본인 청약가점 점수 = ① + ② + ③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※ 2024.03.25 시행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 배우자의 통장이가입기간 점수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	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(50% 적용)	점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년 미만	6개월 미만	1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년 이상 ~ 2년 미만	6개월 이상 ~ 1년 미만	2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년 이상	1년 이상	3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※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%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,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※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※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,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명해야 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 무주택자 우선공급 :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단계	비율	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단계	추첨제 물량의 75%	무주택세대구성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단계	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	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단계	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	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: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 입주자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* 단,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청약안내문[일반공급(가점제)] (3/6)

가점제 적용기준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별표1의1)

구분	내용
<p>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</p>	<p>1)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</p> <p>2)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 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(소형-저가주택)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. 다만,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(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)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</p> <p>가)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: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</p> <p>나)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: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</p> <p>다) 분양권등의 경우 :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(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)</p> <p>3)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,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,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.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(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)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</p> <p>4) 확인방법 : (1)주민등록표등본(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추가), (2)가족관계증명서, (3)혼인관계증명서(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), (4)건물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등본</p>
<p>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</p>	<p>1)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'부양'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※ 2025.06.10.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일부 개정으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(진료개시일,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만 해당한다)을 확인할 서류를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직계존속은 과거 3년간, 직계비속은 과거 1년 내역으로 제출해야 함.</p> <p>2)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. 다만,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,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</p> <p>- 외국인 직계존속</p> <p>-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(「주민등록법」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) 및 해외에 체류중(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)인 경우</p> <p>※ 2019.11.01. 시행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</p> <p>3) 자녀(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)는 미혼으로 한정</p> <p>-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</p> <p>-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</p> <p>4) 이혼한 자녀는 '미혼인 자녀'로 보지 않으며,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</p> <p>- (만30세 미만)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</p> <p>- (만30세 이상)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</p> <p>5) 확인방법 : (1)주민등록표등-초본, (2)가족관계증명서, (3)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</p> <p>- 만18세 이상 ~ 만30세 미만 : 자녀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</p> <p>- 만30세 이상 : 자녀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초본</p>
<p>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</p>	<p>• 입주자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 명의를변경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* 단,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</p>
<p>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</p>	<p>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</p>

청약안내문[일반공급(가점제)] (4/6)

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무주택세대 기준

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 또는 '분양권등'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
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

구분	내용																	
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“세대”란, 다음 각 목의 사람(이하 “세대원”)으로 구성된 집단(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주택공급신청자 나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: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(예) 부모, 장인·장모, 시부·시모, 조부·조모, 외조부·외조모 등 라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, 이하 같음) :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(예) 아들·딸, 사위·며느리, 손자·손녀, 외손자·외손녀 등 마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: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(예) 전혼자녀 등 <p>※ “무주택세대구성원”이란,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,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</p>																	
[주택공급에 관한 규칙] 제53조 제9호 주택 및 ‘분양권등’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시 (무주택 판단기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)에 해당하지 않는 것 :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 가목2)에 따른 가격이 1억원(수도권은 1억6천만원) 이하일 것 나.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: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 가목2)에 따른 가격이 3억원 (수도권은 5억원) 이하일 것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)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)에 해당하지 않는 것 3)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조항</th> <th>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</th> <th>주거전용면적</th> <th>수도권</th> <th>비수도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제53조 제9호가목</td> <td>아파트 (도시형 생활주택 제외)</td> <td>60㎡ 이하</td> <td>1억 6천만원</td> <td>1억원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제53조 제9호나목</td> <td>단독주택</td> <td rowspan="3">85㎡ 이하</td> <td rowspan="3">5억원</td> <td rowspan="3">3억원</td> </tr> <tr> <td>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</td> </tr> <tr> <td>도시형 생활주택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조항	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	주거전용면적	수도권	비수도권	제53조 제9호가목	아파트 (도시형 생활주택 제외)	60㎡ 이하	1억 6천만원	1억원	제53조 제9호나목	단독주택	85㎡ 이하	5억원	3억원	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	도시형 생활주택
조항	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	주거전용면적	수도권	비수도권														
제53조 제9호가목	아파트 (도시형 생활주택 제외)	60㎡ 이하	1억 6천만원	1억원														
제53조 제9호나목	단독주택	85㎡ 이하	5억원	3억원														
	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																	
	도시형 생활주택																	
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 시행일(2018.12.11.) 이후 ‘입주자모집공고, 관리처분계획(정비사업) 또는 사업계획(지역주택조합) 승인’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, ‘공급계약 체결일’ 기준 주택 소유로 봄 (*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,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) 분양권등 매수자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개정 시행일(2018.12.11.)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, (실거래 신고서상)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																	

청약안내문[일반공급(가점제)] (5/6)

가점제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

-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,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(배우자 직계존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
- 무주택기간은 청약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만 30세부터 산정, 만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

구분	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		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	
	무주택기간	기산시점	무주택기간	기산시점
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경우		만 30세가 된 날		혼인신고일
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		만 30세가 된 날 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		혼인신고일 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

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부적격 사례 주의사항

부적격 사유	사례	해석내용
부적격사유	만 35세의 미혼인 청약자가 평생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서 무주택기간을 "30년 이상"으로 선택한 경우	[무주택기간 산정 : 5년]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 단,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그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.
	청약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, 세대분리 된 배우자가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	[무주택자 아님] 무주택세대원 구성 요건으로 청약자 본인, 배우자, 직계존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·비속 등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
	만 65세 이상인 청약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약을 한 경우	[무주택자 아님] 본인(또는 배우자)의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 (* 만 60세 이상인 청약자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.)
	청약자(무주택)와 배우자(무주택)가 세대분리되었고, 배우자가 60세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동거 중인 경우	[무주택자 아님] 분리된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. (* 단, 형제 또는 자매는 해당 없음)
	청약자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소유 이력은 없으나 2022년에 공급된 아파트 청약당첨되어 분양권이 있는 경우	[무주택자 아님] 2018.12.11.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된 분양권의 청약 당첨되어 계약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.

* 상기 사례는 예시로, 해당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청약안내문[일반공급(가점제)] (6/6)

가점제 부양가족 산정 사례 (※ 1순위 청약 시 청약자는 반드시 세대주여야함)

-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(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를 포함)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
- 배우자 분리세대의 세대원을 직계존속으로 부양가족수에 포함할 경우, 배우자는 해당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함

부양가족 산정 기준

부양가족 [2명]	부양가족 [2명]	부양가족 [3명]	부양가족 [3명]
<p>※주민등록 1년 미만 등재</p>	<p>※주민등록 1년 이상 등재</p>	<p>※주민등록 1년 이상 등재</p>	<p>※주민등록 1년 이상 등재</p>
부양가족 [5명]	부양가족 [5명]	부양가족 [5명]	부양가족 [7명]
<p>※주민등록 3년 이상 등재</p>	<p>※주민등록 1년 이상 등재</p>	<p>※주민등록 3년 이상 등재</p>	<p>※주민등록 3년 이상 등재</p>

부양가족 기준 부적격 사례 주의사항

부적격 사유	사례	해석내용
부적격사유	청약자 본인, 배우자, 자녀 2명 세대의 부양가족을 본인 포함 4인으로 신청한 경우	[부양가족 3명] 청약접수 시 청약자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해야 합니다. (청약자의 배우자, 직계존·비속은 부양가족이며, 형제 또는 자매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)
	청약자 본인, 배우자, 부친(만 60세 이상, 주택소유) 세대의 부양가족을 2명으로 신청한 경우	[부양가족 1명] 부친이 만 60세 이상으로 무주택 인정 받더라도,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합니다.
	청약자 본인, 배우자, 아들, 며느리 세대의 부양가족을 3명으로 신청한 경우	[부양가족 1명] 직계비속(자녀)은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양가족 가능합니다.
	청약자 본인, 배우자, 아들(만 30세 이상 미혼, 8개월 전 전입) 세대의 부양가족을 2명으로 신청한 경우	[부양가족 1명] 만 30세 이상 미혼 직계비속(자녀)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.

* 상기 사례는 예시로, 해당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